

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전시사업부 국내외전시 시행세칙

제1조 [목적]

본 규정은 국내외 전시작품전의 작품 출품, 전시발표 등에 관한 기본 내용으로 (사)한국문화상품디자인학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문화·디자인 분야의 창작활동 진흥과 교류의 확대 발전을 위한 준칙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운영과정 및 방법]

1. 회장은 운영위원장을 선임하고,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작품전 일정과 운영방법을 결정한다.
3. 운영위원장은 작품전 전체 운영과정에 책임의식을 갖고 진행하며, 정기총회 시에 운영결과를 발표한다.

제3조 [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]

1. 회장은 출품작품의 시상 작품 선정을 위하여 작품편집위원장을 포함, 운영위원회 및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.
2. 출품작품의 심사는 '상품문화디자인'을 매개로 한 창작물로서 심사기준의 적합성으로 판정한다.
3. 심사위원장의 주재 하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한다.
4. '최우수작품상'은 심사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해 선정한다.

제4조 [진행 과정 및 방법]

1. 운영위원회는 최소 1개월 이전에 출품신청 기간과 심사규정, 출품방법 등을 공지한다.

제5조 [출품 자격]

전시작품전의 출품 및 전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다.

1. 전시작품의 출품자는 (사)한국문화상품디자인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, 소정의 심사를 거쳐 1인 1작품 발표할 수 있다.
2. 전시작품전의 개최 취지에 부합하며 상품문화 분야의 학술 및 창작 활동 진흥과 교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작품은 회장과 작품편집위원장의 승인 하에 출품 및 전시 발표할 수 있다.

제6조 [수상자 혜택]

작품전 '최우수작품상'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장을 수여하며, 수상자는 당해년도 수상 후보가 된다.

부칙

1. 본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2.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개정 시행한다.
3.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